

영남대학교 문화인류학과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지역재생을 위한 문화유산 큐레이팅》교육연구팀
윤리위원회 윤리규정)

제정 2021.02.1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영남대학교 문화인류학과 4단계 BK21사업과 관련된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청탁·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논문, 자료집)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표기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청탁”은 논문 게재, 과제연구비 지원 및 기타의 목적으로 관련자에게 심사결과를 유리하게 유도하거나 조작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5.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6.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7.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 ② “제보자”는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 ③ “피조사자”는 제보나 위원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자로 추정되어 조사 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2장 윤리위원회 운영

제3조(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의 경우 사업팀장이 역임하며, 위원은 사업팀의 참여교수 2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행정지원을 위한 간사는 신진연구인력이 맡는다.
- ④ 위원장 혹은 위원회의 위원들은 관련 전문가를 본 윤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4조(임무)

위원회는 사업팀의 구성원과 본 사업팀을 통하여 연구비를 지원받은 자 및 사업팀의 명의로 간행되는 각종 연구물(논문·학술지·보고서·연구총서 등)의 저자 등에 대해서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이의가 제기될 경우 심의 및 의결한다.

1. 연구윤리·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진행과 결과 도출
4.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5.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판정 및 후속조치에 관한 권고
6. 기타 사업팀장 또는 참여교수 혹은 신진연구인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회의)

- ① 연 1회 이상 위원장은 윤리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필요 시 위원 1인 이상의 요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② 회의는 윤리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장 및 위원의 과반수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 ④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3장 연구 진실성 검증 청구와 절차

제6조(청구)

- ① 제보자는 위원장에게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다. 제보 시 실명으로 제보해야 하며 제보자는 보호대상에 포함된다.(단, 허위사실임을 알고도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 ② 제보자는 보호대상으로 인정되면 제보자가 원하는 경우 제보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한 비밀 유지를 위원회가 보장해야 한다.
- ③ 제보자는 제보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없다.(단,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별도의 제제를 받을 수 있으며, 사업팀의 사업수행에 지장을 줄 경우 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4단계 BK21사업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7조(시효)

- ①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10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② 10년 이전의 부정행위일지라도 피조사자가 그 결과를 직접 재인용하여 후속연구의 기획 및 연구비의 신청,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에 사용하였을 경우와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를 조사할 수 있다.

제8조(예비조사)

- ① 위원장은 제보를 접수한 직후 2인 이내의 윤리위원으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단,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인 이내의 관련(외부)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 ② 예비조사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한다.

- ③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 1. 제보내용이 제2조 제1항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 조사의 실행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 3. 검증 시효의 해당 여부
- ④ 예비조사 결과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 3. 본 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 근거
 -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 ⑤ 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 보고를 바탕으로 본조사의 실시 여부를 의결한다.
- ⑥ 본조사는 윤리위원회 전원이 참석하여 전 위원이 찬성할 경우 실시한다. 본조사가 부결 될 경우 위원장은 조사를 종료하고 그 사실을 제보자에게 통보한다.

제9조(본 조사 착수 및 기간)

- ① 본조사는 위원회가 본 조사를 결정한 직후 15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한다.
- ② 본조사는 조사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필요에 따라 조사종료일 15일 이내에 1차에 한하여 30일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 전원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10조(조사위원회의 구성)

- ① 위원회는 본조사를 위한 조사위원회를 2인 내외의 조사위원을 선정하여 구성한다.
- ② 조사위원은 위원 중에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관련 (외부)전문가를 1인 이내로 포함할 수 있다.
- ③ 위원장은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리고, 제보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제11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 ① 조사위원회는 제보자 · 피조사자 ·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및 비밀엄수)

-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이 직·간접적으로 노출 되어서는 안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제보자 보호차원에서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하지 않는다.
- ②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적극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 ③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경우 명예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④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위원회 및 위원장과 조사위원, 조사 관계자는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 할 수 없다.
- ⑤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하에 위원회를 통해 조사결과보고서, 최종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다.

제13조(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조사와 관련된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14조(결과 보고 및 판정)

- ① 조사위원회는 조사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조사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4. 관련 증거 및 증인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6. 조사위원 명단
- ② 위원회는 조사위원회에서 보고한 조사결과를 심의하여 최종 판정하며 제

보자와 피조사자에게 그 결과를 24시간 내로 통지한다.

③ 위원회는 판정은 전원합의를 원칙으로 한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 재적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보칙

제15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 ① 위원회는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의 행위가 윤리규정에 어긋난다고 판단될 시 제제를 가할 수 있다.
- ② 제제의 수위는 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사업팀의 사업수행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최대 4단계 BK21사업에서 제외 될 수 있다(제외 될 경우 당월까지 지급받은 장학금은 회수하지 않는다).
- ③ 피조사자의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을 경우 사업팀은 피조사자의 명예를 회복시키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16조(재심의)

- ①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결정을 통지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위원장은 재심의 요청이 접수된 후 7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 재심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③ 재심의의 기간과 절차는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7조(경비)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사업팀의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준용규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의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한 규정과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준용한다.

부 칙(2020.11.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규칙)

연구팀장, 참여교수, 신진연구인력, 각 랩의 팀장 등은 해당 규칙의 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